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(2025. 2. 12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강현주 복지정책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자활기금의 설치 규정이 법정의무 사항으로 개정(2019.1.15. 개정, 2019.7.15. 시행)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근거 법령 정비(안 제1조)

○ 상위법령에 따라 자활기금의 조성 재원 정비(안 제2조)

○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(안 제10조의2)

다. 관련법령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7(자활기금의 적립) 및 제18조의8(자산형성지원)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3(기금의 재원)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및 자활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'포항시 자활기금'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육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임.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2조에서 기금이란「지방자치법」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이라 정하고 있는 바, '포항시 자활기금'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제26조의5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른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비하였고,
 안 제4조와 안 제9조는 조례 개정과 함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10조2에서 기존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한 것은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본법」제4조 제1항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 되는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'포항시 자활기금'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검토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